



청년녹색당 제 2차 정기총회

일시 : 2014년 2월 16일(일) 오후 2시~6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주최·주관 : 청년녹색당 총회준비위원회

협찬 : 스페이스노아

목차

식순	3p
안건	4p
<안건1> 총회준비과정 인준의 건 -참고자료: 청년녹색당 제2차 총회의 준비과정을 공유합니다!	5p
<안건2> 내규 개정의 건 -참고자료: 규약 구·신 조문 대조문	6p
<안건3>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출의 건	15p
<안건4>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위임의 건	

식순

1부	
15:00~15:15	축하공연 및 아이스브레이킹
15:15~15:25	사회오프닝 : 정족수 확인
15:25~15:40	안건 1 총회준비과정 인준 : 준비과정 소개
15:40~17:00	안건 2 규약개정 : 규약개정안 비교설명 및 토론
17:00~17:15	휴식
17:15~18:05	안건 3 운영위원 선출 : 선출방식 안내, 출마의 변 발표, 투표
18:05~18:45	안건 4 운영위원장 선출 : 선출방식 안내, 출마의 변 발표, 투표
18:45~18:55	운영위원단 간단 소감 및 각오 한마디
18:45~19:00	사진촬영 및 사회클로징
2부	
19:00~	저녁식사 및 뒤풀이

안건

<안건1> 총회준비과정 인준의 건

(주문사항) 총회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총회를 구성한 과정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총회준비과정을 인준해주십시오.

<안건2> 내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내규 개정안을 채택해주십시오.

<안건3> 운영위원 선출의 건

(주문사항)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운영위원을 선출해 주십시오.

<안건4> 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주문사항)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해주십시오.

<안건1> 총회준비과정 인준의 건

청년녹색당 제2차 총회의 준비과정을 공유합니다! (총회준비위원회 경과보고)

2013년 9월 28일, 홍대입구역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청년녹색당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참석하신 20여명의 녹색당 청년 당원 및 참관 당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존속과 해체, 청년정책모임으로의 전화 등의 주장이 나왔던 이 토론회에서, 존속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013년 11월 3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토론회에 참가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임시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에는 지난 청년녹색당의 1기 2기를 평가하고, 각자의 바람과 비전을 담아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대강의 모습을 구상해보면서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2013년 11월 30일, 시청역 스페이스 노아에서 총회준비위원회의 발족을 겸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참가자 15명 중 11명(김여원, 김준태, 민철식, 유선우, 이도연, 이환희, 전요은, 전형우, 정유진, 정인선, 진달래)이 총회준비위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총회준비위원장으로 이환희, 정유진을 선출하고 총회준비를 위한 실무를 분담했습니다.

2013년 12월 23일, 영등포에서 종로로 이전한 녹색당사에서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재건될 청년녹색당의 재구조화를 위한 밑그림을 큰 틀에서 그려보았습니다. 송년회를 함께 가졌고, 밀양송 전담대책위원회에 전달하는 성금 모금을 위한 각자의 소장품 경매 시간도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11일, 서교동 씽크카페 카페 더 웨이에서 규약개정팀의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규약의 초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을 최대한 완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3일, 녹색당사에서 규약개정팀의 두 번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모임에서 미처 논의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4년 1월 16일, 종각역 카페 드람브르에서 3차 총회준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날짜 및 장소가 확정되고 총회에 맞추어 각각의 업무가 분담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총회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 4일, 종각역 카페 드람브르에서 4차 총회준비위원회 및 세 번째 규약개정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은 내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재점검하고, 실무 진행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분담하였습니다.

<안건2> 청년녹색당 규약 개정의 건

청년녹색당 규약(안)

(2014년 2월 개정)

◎개정 목적 : 청년녹색당 총회준비위원회의 논의 결과 청년녹색당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규약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총회준비위원회는 규약개정팀을 꾸려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의 방향

1. 녹색당 당헌과 서울녹색당 규약을 기준으로 삼아 참조하였습니다. (남녀 각 1인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2. 운영위원장의 숫자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듬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로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운영위원 6인 및 청년모임 운영위원)
3. 추상적인 부분들을 떼어내어 추후에 청년녹색당 강령이나 소개글로 작성하기로 하고, 규약에는 실질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만을 담았습니다. (기존 규약의 제2조, 제5조 2항 등)
4. 운영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어 조직이 나아가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완화하였습니다. (전국총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온라인 당원총투표의 실시 등)
5. 중복되거나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규약의 경제성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36세 이상인 당원의 권리 등)
6. 기존 규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 조항, 상벌 위·예결위·선관위 조항, 탈퇴 조항 등)

기존 규약

1장 총칙

제1조(명칭) 녹색당 청년당원모임의 명칭을 청년녹색당이라고 합니다.

제2조(목적) ① 청년녹색당은 한국사회에 동원되는 타자임을 거부하고 지구 녹색당의 이념인 생명존중과 평화,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비폭력 등 녹색청년이 살아갈 미래의 시대정신을 가지며 세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경제·사회·정치적 청년 소외·극복을 위해 활동합니다.

제3조(조직) 청년녹색당은 자발적 지역청년모임과

새로운 규약

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모임의 명칭을 '청년녹색당'이라고 합니다.⁸⁾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당헌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청년당원모임인 청년녹색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⁹⁾

8)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9) 추상적인 내용을 떼어내어 강령 혹은 소개글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색당 당헌과 서울녹색당 규약을 참조하여 조직의 목적이 아닌 규약의 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교모임의 연합체입니다.

2장 당원

제4조(당원) 청년녹색당원은 녹색당원 중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니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청년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청년녹색당 규약이 정하는 당직·공직에 참여할 권리
2. 청년녹색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청년녹색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집니다.

1. 전 우주적 생명체의 관점에서 타자의 천부적 권리를 존중할 의무¹⁾

③ 36세 이상인 녹색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²⁾

1.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④항 3의 권리
2. 의사결정과 청년녹색당 당직·공직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³⁾

④ 그 외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릅니다.

3장 조직

1절 구성 및 원칙

- 1) 추상적인 내용을 떼어내어 강령 혹은 소개글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 36세 이상 당원이 의결을 제외한 청년녹색당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약에 명시하기보다 소개글에 쓰거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제5조 1항에서 35세 이하 당원의 권리를 명시해놓았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조직) 청년녹색당은 자발적으로 지역, 학교 및 기타모임을 조직합니다.¹⁰⁾

2장 당원

제4조(당원) 청년녹색당원은 녹색당원 중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니다. (이하 당원이라 합니다.)¹¹⁾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청년녹색당 규약이 정하는 당직에 참여할 권리
2. 청년녹색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청년녹색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

② 그 외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당규에 따릅니다.

3장 조직

제6조(평등의 원칙) 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10) 현실적으로 지역 및 학교모임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청년녹색당 조직 자체가 잘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연합체'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 학교 모임, 의제 모임 등 기타 모임을 포괄하기 위해 청년모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11) 편의를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모임구성)⁴⁾ ① 청년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청년모임 및 학교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지역청년모임 및 학교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제7조(평등의 원칙) 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년녹색당의 모든 기관과 위원회 구성 시에 동등한 성비가 되도록 합니다.

② 농·어촌지역청년, 장애인, 소수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 및 위원회 구성시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2절 청년녹색당 전국총회

제8조(지위와 권한) ① 청년녹색당 전국총회는 청년녹색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이하 전국총회라 합니다.)

② 전국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약의 제·개정
2.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해임⁵⁾
3. 연간 사업 및 예결산안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당의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제9조(소집 및 안건상정) ① 정기 전국총회는 매해 겨울(농한기)에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임시 전국총회는 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전국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

④ 전국총회의 소집은 개최 14일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4) 순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17조로 이동하였습니다. (녹색당 당헌의 순서 참조)

5) 운영위원의 신설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청년녹색당의 모든 기관과 위원회 구성 시에 동등한 성비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¹²⁾

② 농·어촌지역청년, 장애인, 소수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우선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1절 청년녹색당 전국총회

제7조(지위와 권한) ① 청년녹색당 전국총회는 청년녹색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이하 전국총회라 합니다.)

② 전국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결
2. 공동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3.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청년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의결
6. 청년녹색당의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관한 결정

제8조(소집 및 안건상정) ① 정기적인 전국총회는 매해 겨울(농한기)에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¹³⁾

②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¹⁴⁾

12) 기존의 조항이 엄격하게 성비를 규정해놓아, 오히려 운영 의지가 있는 당원의 참여를 막고 조직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3) 공동운영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전국총회를 소집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운영위원회로 권한을 변경하였습니다.

- ⑤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총회는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합니다.
 2.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일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
 3. 단, 의결정족수는 실제 재석 인원으로서 하며, 2/3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4. 위임장 제출을 포함한 재석 인원이 1/2를 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당일 의결은 불가하나 논의는 가능합니다.
 5.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합니다.⁶⁾
- ⑥ 전국총회의 안건 상정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지역청년모임 및 학교모임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청년녹색당원 중 1%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이상의 안건 발의는 전국총회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고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전국총회 당일 재석인원 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순서 통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절 회의기관

제10조(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 ① 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운영위원장 4인
 2. 지역청년모임과 학교모임에서 각 모임의 대표자로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
 3. 사무국장
- ③ 운영위원회는 전국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6)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③ 임시 전국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나 당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소집합니다.¹⁵⁾
- ④ 전국총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 대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¹⁶⁾
- ⑤ 전국총회의 소집은 개최 14일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 ⑥ 전국총회의 성립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총회는 전체 당원의 1/10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합니다.
 2. 위임장을 서면 혹은 전자서면으로 작성하여 총회일 3일 이전까지 제출할 경우, 재석인원에 포함합니다. 단, 위임장의 비율은 2/3 이하로 합니다.¹⁷⁾
 3. 의결정족수는 실제 재석 인원으로서 하며, 1/2 이상의 결의로 합니다.
- ⑦ 전국총회의 안건 상정은 다음의 내용을 따릅니다.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청년모임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청년녹색당원 중 10명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¹⁸⁾
 4. 이상의 안건 발의는 전국총회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고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전국총회 당일 당원 20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순서 통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¹⁹⁾

2절 운영위원회²⁰⁾

- 14) 불필요한 '청년녹색당'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 15) 제9조 1항과 같은 이유로 당원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16) 온라인으로 당원총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운영의 편의를 더하였습니다.
- 17) 위임장의 비율을 추가하였습니다.
- 18)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정족수를 비율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19)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정족수를 비율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20) 기존의 공동운영위원장 4인(추첨을 통해 남2, 여2)

1. 청년녹색당의 일상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의결과 집행
2. 온라인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3. 청년녹색당 규약의 해석
4. 청년녹색당의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청년당원 총투표에 안건을 부칠 권한

제11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되는 청년녹색당의 대면 회의입니다.

- ② 정기회의는 청년녹색당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모든 청년당원의 자율적 참여로 구성됩니다.
- ③ 정기회의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 ④ 정기회의의 권한은 운영위원회의 권한(10조4항)과 같습니다.

제12조(온라인회의) ① 온라인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당원의 요청으로 상시 개최가 가능합니다.

- ② 온라인회의는 일상적인 소통의 공간으로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장입니다.
- ③ 당원은 청년녹색당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일 추가 안건을 접수하여, 접수 순서대로 '기타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 ⑤ 온라인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정기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의 안건에 우선적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4절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국

제13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4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등한 성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2. 2인 이상은 본인이 특정 소수자 집단을 대표하며 그 의견을 당에 대변하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1인 이상은 농어촌 및 행정구역상 군, 읍, 면, 또는 리 거주자가 포함되도록 합니다.
-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운영위원장
2. 운영위원

③ 공동운영위원장 2인을 포함한 운영위원 4명은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제10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여성 1인과 남성 1인으로 선출합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위원 당선자를 후보로 합니다²¹⁾.
2.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녹색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됩니다.
3. 회의에 참여하여 특별히 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에서 의장이 됩니다.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 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²²⁾

⑤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²³⁾

체제가 다수의 위원장 수로 인해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1여1로 축소) 상시적으로 청년녹색당을 운영해야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천보다 선거가 보다 더 책임성과 효율성을 가진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규약 제13조 1항 2호, 3호의 소수자 조항 삭제)

21) 운영위원 당선자 8인 중 2명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 임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3)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였습니다.

1. 당원의 추천을 받은자와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무기명 찬반투표를 합니다.
 3. 추첨을 통해 선출하여 전국총회의 인준을 받습니다.
 4.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녹색당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됩니다.
 3. 회의를 소집하며, 특별히 의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에서 의장이 됩니다.

제14조(사무국)⁷⁾ ① 청년녹색당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습니다.

- ② 사무국장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 ③ 사무국의 활동 및 노동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5조(겸임금지) 청년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당내 다른 당직, 공직을 겸임을 하지 못합니다.

7) 사무국의 임무를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에게 위임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운영위원)²⁴⁾

- ① 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하 전국위원)과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② 전국위원은 6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 ③ 전국위원의 임기는 정기 전국총회 선출시부터 다음 정기 전국총회까지이며, 중임이 가능합니다.
- ④ 전국위원의 선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의 추천을 받은 자와 스스로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합니다.
 2.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찬반을 가립니다.
 3. 기타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 ⑤ 10명 이상의 청년모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제12조(겸임금지) 청년녹색당의 운영위원은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을 겸임 하지 못합니다.²⁵⁾

제13조(의무와 권한)

- ① 운영위원회는 전국당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²⁶⁾
 1. 청년녹색당의 일상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의결과 집행
 2. 청년녹색당 규약의 해석
 3. 청년녹색당의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전국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권한
 4.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총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

24) 공동운영위원장을 2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활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6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전국당원대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10명 이상의 청년모임 운영위원 중 1명을 포함시킵니다.

25) 기존 규약에서 겸임금지 조항이 모호합니다(당직, 공직의 범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년녹색당과 전국녹색당, 지역녹색당 간의 겸임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은 청년녹색당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6) 온라인회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운영체계 변경에 따라 5~7호를 추가하였습니다.

- 5. 전국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 6.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운영위원 2인 선출

제14조(운영회의)²⁷⁾ ① 정기 운영회의는 월 1회 개최됩니다.

② 임시 운영회의는 운영위원회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③ 정기 및 임시 운영회의(이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모든 청년당원의 자율적 참여로 구성됩니다.

④ 회의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절 위원회 및 청년모임²⁸⁾

제15조(상별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 상별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는 각각 전국녹색당 상별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청년녹색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정기 전국총회 한 달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2명을 임명합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제17조(모임구성) ① 청년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청년모임, 학교모임, 의제모임 및 기타 모임(이하 청년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청년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27) 기존의 정기회의와 온라인회의를 운영회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운영회의에는 운영위원을 포함한 모든 청년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성사와 의결 정족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8)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기존 규약에 없었던 부분인 상별위, 예결위, 선관위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4장 재정

제16조(재정) ① 운영위원회는 연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재정을 당비에서 지원받습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에 따른 결산내역을 분기별로 당원들에게 보고합니다.

③ 재정은 청년녹색당의 사업비, 지역청년모임과 학교모임의 사업비, 운영위원회의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청년녹색당 재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가집니다.

5장 해산

제17조(해산)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합니다.

1. 당원 모두 탈퇴한 경우
2.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③ 10명 이상의 모임 구성 시 내부적으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1인은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모임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합니다.²⁹⁾

④ 청년당원들은 원하는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제17조 3항의 최소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최대 3개의 모임까지만 중복 등재할 수 있습니다.³⁰⁾

4장 재정

제18조(재정) ① 운영위원회는 연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재정을 당비에서 지원받습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에 따른 결산내역을 분기별로 당원들에게 보고합니다.

③ 재정은 청년녹색당의 사업비, 청년모임의 사업비, 운영위원회의 활동비 등에 사용됩니다.

④ 운영위원회는 청년녹색당 재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³¹⁾

5장 해산 및 탈퇴

제19조(탈퇴 및 재가입)³²⁾ ① 당원이 탈퇴 혹은 재가입의사를 담은 문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시 청년녹색당에서 탈퇴 및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② 문서의 제출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9) 일정한 기준(10명 이상)을 정해 지역 및 학교모임의 운영위원이 청년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0) 지역과 학교, 의제모임 등과 연계되는 '청년'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어떤 모임이든 활동할 수 있게 하되, 과대 대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멤버십의 중복 등재를 최대 3개로 제한하였습니다.

31) 재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는 전국녹색당 예결위에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재정을 집행합니다. 또한 녹색당 전국사무처의 청년녹색당 담당자가 재정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합니다.

32) 기존 규약으로는 청년녹색당을 탈퇴하고 싶어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탈퇴와 재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제1기 청년녹색당의 위원장이 제 1회 총회에서 인준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며, 청년녹색당은 본 규약이 통과됨에 따라 상론을 충실히 따르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정합니다.

제20조(해산)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산합니다.

1. 당원 모두 탈퇴한 경우
2. 당원총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부칙

제1조(규약의 미비)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녹색당 당헌, 당규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³³⁾

제2조(당원총투표)①당원총투표는 당원의 1/3로 성원이 되며 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②당원총투표는 오프라인 방식을 포함하여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³⁴⁾

제3조(시행) 이 규약은 2차 총회에서 인준 받은 시점부터 적용하며, 필요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정합니다.³⁵⁾

2012.11.17. 제정

2014.02.16. 개정

33) 규약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규약이 포함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비하였습니다.

34) 총회 정족수를 없애는 대신 당원총투표에 대한 정족수를 명시함.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방식을 포함하였습니다.

35) 규약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건3>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 선출의 건

개정된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위원 및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선출방법

1.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선거위원을 합의에 의해 지정합니다.
2. 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발언합니다. 한 후보당 3분내외로 발언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집니다.
3.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후보의 수가 선출대상 운영위원 8인을 초과할 경우 찬성득표가 많은 순서대로 8인을 선출합니다. 단, 찬성득표수는 최소한 재석인원 50%이상이어야 합니다.
4. 8인 이하의 운영위원 중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공동운영위원장에 입후보합니다. 운영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공동운영위원장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운영위원장 입후보자들은 출마의 변을 발언합니다. 한 후보당 7분 내외로 발언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집니다.
6. 공동운영위원장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남성 1인, 여성 1인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각각 비밀투표를 통해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합니다. 단, 입후보자가 각 1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통해 재석인원의 50%이상의 찬성득표로 선출합니다.
7.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 2인과 운영위원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추후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청년녹색당원모임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출마의 변

민 철 식 (서울 은평 당원)



안녕하세요, 청년녹색당 당원 여러분.

저는 이번에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에 출마하는 청년 당원 민철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결정했습니다.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에 출마하고자합니다.

녹색당 당원으로서 처음으로 운영위원으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저의 정치경험은 많이 없지만 다른 진보정당에서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진보적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으로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의 가치에 대한 저의 관심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녹색당에서 당원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으로 선출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계획은 청년녹색당으로서 해야 될 사업이 청년녹색당 파행으로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못했던 청년당원 엠티나 청년초록정치강연회를 해보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청년당원들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후보 2> 이도연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출마의 변

이도연 (전북당원)

지난 토론회 이후 총회준비 위원회 발족을 하고 총회준비를 해 온 지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총회준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건, 자발적으로 가입을 결심한 첫 정당에서, 항상 마음만 가지고 활동을 못했던 결과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녹색당,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또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청년녹색당이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영위원에 출마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생업이 바쁘기에, 운영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마하게 된 것은 청년녹색당이 계속 존재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공존하고, 다양한 생각과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청년녹색당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떴을 뿐입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아 한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애정을 가진 당원들의 힘으로 이렇게 총회가 성사될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잘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후보3> 이환희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출마의 변

이 환 희 (서울 마포 당원)

제겐 녹색당이 첫 정당이 아닙니다. 십대의 끝에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서 처음으로 정당이란 곳에 가입했습니다. 이후로도 몇 개의 당적을 더 가져봤습니다. 그 정당들을 거치면서 이념과 삶의 태도가 유사한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십 수 년의 인연을 지닌 친구들과만큼이나 지난 정당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지금 저의 소중한 지인들이라는 게 그것을 방증합니다.

청년녹색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망가져갈 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안타까웠습니다. '정치'를 진지하게 논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들이 주위에 잘 없고, '생태주의'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이들은 더더욱 드문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협소해짐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비슷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한다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동종교배가 열성을 낳을 확률이 높은 것처럼 자신들만의 고고함에 취한 일군의 도덕적이고 자족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이 약간씩 다른 동종'들이 모여 때론 서로 공감하고, 또 때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의견을 조율해나가다 보면 이종교배보다 나은 결과를 낳아 구성원 개개인이 성장함과 동시에 좋은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은 조직이라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들 안에서만 언어를 공유하면서 자위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또 때로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단은 '녹색 청년'들이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을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발생할 여러 사건들로 인해 그 공간이 하나의 '장소'로 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녹색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녹색 정치세력의 재생산이니 뭐니 하는 '어마무시한' 욕심을 부리는 건 그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녹색당이 저의 첫 정당은 아닙니다. 마지막 정당이 된다면 좋겠지만 미래는 늘 불가지의 영역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고도 중요한 점은 현재의 제가 녹색당원이며, 청년 녹색당의 운영위원에 출마했다는 사실입니다. 운영위원이 된다고 해서 뭔가 거창하고 획기적인 일을 벌이면서 제 사적 생활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몸담았던 과거의 어느 정당들보다 녹색당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는데 나름 애써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지와 격려, 무엇보다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출마의 변

전 형 우 (서울 성북 당원)



2012년 12월쯤 녹색당에 가입했습니다. 청년녹색당 행사에 서너 번 참석했었죠. 2013년 2월에 오스트리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독일 학생사회에서 녹색당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잘츠부르크의 지방선거에서는 녹색당이 커다란 승리를 거두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녹색당 활동을 열심히 해보아야지 마음먹었습니다.

돌아와보니 청년녹색당은 공동운영위원장이 모두 사퇴하고 와해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과 다니는 학교에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녹색당 활동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중 2013년 9월 28일에 청년녹색당의 존속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참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녹색당을 다시 세우는 데 참여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 간 총회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영국의 청년녹색당(영그린스) 홈페이지를 번역해보았습니다. 조직을 처음 만들고 무엇을 운영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매뉴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영국의 영그린스는 학교 내 노동자들과 임원의 임금을 최대 10:1로 제한하는 운동부터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 만16세 선거권 도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운동을 합니다. 많은 학교들에 영그린스가 조직이 되어 지역 사회와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부러운 마음을 안고 현실을 돌아보니 시궁창까지는 아니어도 막막했습니다. 조직은 사라졌고, 규약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규약 개정안을 만드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총회를 열기 위해 준비위원 분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청년녹색당을 다시 세우려고 10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총회를 준비하고 규약을 만들면서 오랜만에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녹색당의 이름을 되찾는 순간을 보았고, 오랜만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청년녹색당 운영위원이 된다면 작은 것부터 바뀌나가겠습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또래들이 모여서 녹색의 가치에 대해 공부하며 몸으로 익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거리로 나가고, 함께 탈핵희망버스를 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청년녹색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 5> 진달래

청년녹색당 운영위원 출마의 변

진 달 래 (인천 당원)

직접 발족식에서 사회를 보았던 청년녹색당과 함께한지도 벌써 만 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정말 좋은 동지들을 만났고 당연하겠지만 좋은 사람들과도 여러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조직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이라도 모두 처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고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으며 조직도 달라지고 우리 자신도 달라져 왔습니다. 그동안 청년녹색당에서 짐을 좀 덜 지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떠밀지 않으려 합니다. 1년 3개월 만에 새로운 규약으로 함께하는 청년녹색당의 앞으로의 사업을 책임감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함께하려 합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더 민주적이고 모두가 즐거운,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청년녹색당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위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